

## 일 러 두 기

1. 본 범죄통계는 2011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처리한 형사사건을 분석하여 치안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본 통계는 2011년에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3종의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해서 전산 입력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것임
3. 통계의 단위는 건수와 인원으로 되어 있음. 건수는 발생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발생건수’와 검거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검거건수’로 구분 됨. 인원은 피의자통계원표 중 사건송치가 완료된 자연인 피의자이며, 범죄자특성 분석시에는 자연인 피의자만 분석하되 미분류된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함
4.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범죄통계의 분류에서 각 죄명의 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및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함
  - 4-1.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위반행위속성)를 우선적 기준으로 하며(제1분류원칙), 범죄피해(법익침해유형)를 이차적 기준으로 함(제2분류원칙). 이에 따라 예전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1년도 범죄통계분석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구분함. 세부적인 죄종은 범죄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존의 377개에서 395개로 확대됨
  - 4-2. 특별법 위반 범죄는 기존에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형식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였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실질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도로 제시함. 주로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함

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폭력행위 등’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에 분류함.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직무유기’로 분류함

4-4. 기존의 강간범죄는 강간·강제추행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심으로 상세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속범죄’에,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에 분류함. 다만,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13세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은 실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항목에 입력하는 관행 때문에 이에 합산함

5.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임

6. 살인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함

7. 재범자 재범종류의 동종과 이종의 구분은 전과자의 전회처분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것임

8. 소년범죄자의 연령은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19세미만이며, 고령범죄자의 연령은 65세이상임

9. 예전에는 검거인원의 성별구분에 미분류가 없이 남자, 여자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나, 미분류 항목을 추가하여 정확성을 기함

10. 예전에는 범죄발생시간을 알지 못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상항목이 없어 '00'시에 포함시켰으나,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상을 추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등 여러 항목에 미상 또는 미분류 항목을 추가함
11. 범행장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상점으로 분류되어 있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은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기타로 분류되어 있던 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PC방도 별도로 제시하였으므로 연도별 분석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함
12. 범죄자유형별 분석에는 여성범죄자, 미성년범죄자, 학생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이외에 최근의 범죄실태를 반영하여 외국인범죄자와 고령범죄자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
1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 통계는 '지방경찰청별' 통계임
14. 정확한 의미의 검거율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 중에 2011년에 검거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단순히 2011년에 발생한 사건 대비 2011년에 검거한 사건의 비율로서 이 수치에는 2011년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검거사건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검거율'이라는 용어를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의 비율(발생대비검거율)'로 수정함
15. 구성방식은 예전에는 범죄개요, 범죄분석도(그래프), 범죄통계표 등 3분야로 분류하고 통계를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범죄개요,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별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편의성을 높였음
16. 범행수법, 범행장소 등과 같은 분석항목의 분류항목은 분류항목 수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분류항목이라도 분류기준이 재조정되어 기 발행된 '범죄통계'의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2011년 범죄통계」를 기 발행된 범죄통계와 비교하거나 추세분석에 활용할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